

기계설비 분리발주 및 공동도급 적극 시행 독려

- 서울특별시, 각 구청 및 산하기관 등 -

서울특별시회(회장 이상일)가 지난 7월 22일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에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를 건의한 결과, 서울특별시는 각 구청 및 산하기관 등에 “고품질의 기계설비 공사가 시공될 수 있도록 분리발주 및 공동도급 계약을 적극 시행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상일 서울특별시회 회장은 최근 서울특별시에 “지난 2월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해 5월 문승국 행정 제2부시장님과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건설업체 육성정책이 서울특별시의 시정목표와 부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한 결과, 서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지난 5월 16일 개정·공포됨으로써 중소기업업자의 공사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가 마련됐다”고 밝히며 “이 조례가 유명무실화 되지 않도록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적극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따라 서울특별시는 대한설비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각 구청 및 산하기관 등에 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 및 공동도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극 시행할 것을 협조요청 함으로써 향후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의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대한설비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가 서울특별시에 건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에 의거,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 분리발주(주계약자 공동도급) 적극 시행 요망

- 전문건설업 특히 기계설비공사에 대하여 분리,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극 시행으로 하도급에 의한 불공정 행위 개선
 - 에너지 절감을 위한 녹색건축물 건설 장애, 공사품질 저하, 건축물생애주기 단축,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발생, 유지관리비 증가, 정부정책에 대한 시장경제 불신 등
- 설계도서가 별도로 작성된 기계설비공사에 대해서는 관련법 범위 내에서 기존의 행정편의주의 일괄계약방식 개선
 -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 SH공사, 자치구 등에서는 이행실적 전무 또는 부진

함께 아끼는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및 공동도급 계약 협조 요청

1. 설비협서울 제2013-277호(2013.7.22.)와 관련입니다.
2. 기계설비공사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냉 난방, 급수, 급탕, 공기조화설비를 시공하는 공사로서 고 품질의 시공은 건축물의 수명연장은 물론이고 준공 후 유지관리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 및 공동도급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고 품질의 기계설비공사가 될 수 있도록 분리발주 및 공동도급 계약을 적극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및 공동계약 관련 규정 1부. 끝.

서울특별시



수신자 서관과 01-125, 서구1-25, 서사01-37, 서울시출연기관

사무관 김형기 설비사업장 김태기 기술사업담당관 07/25 최진선

협조자

시행 기술사업담당관-12577 (2013.7.26.) 결수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11 / http://infra.seoul.go.kr 중)

전화 2133-8582 /전송 2133-07 / khg1208@seoul.go.kr / 대시민공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및 공동계약 관련 서울특별시 규정

1. 분리발주 관련 규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제3호

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2)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3.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 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분할 발주 가능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시장은 지역 중소기업자의 공사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검토·시행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안전행정부예규 제2호, 2013.3.26)

제1절 5. 분할계약의 금지

나. “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3)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해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2. 공동도급 관련 규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①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공동도급의 유형,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 등 공동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상 공동계약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공동계약으로 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9조

시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안전행정부예규 제2호, 2013.3.26)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1절 통칙

1. 목 적

이 요령은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의 체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공동도급의 유형

다. 주계약자 관리방식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가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이 경우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된다.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요령은 법 제29조, 시행령 제42조와 제88조 등에 따라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낙찰자 결정기준과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종합공사로서 발주기관이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발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종합 건설공사와 다른 법령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 등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발주할 수 없다. ◉

